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

발의연월일: 2024. 6. 7.

발 의 자:서영교·권칠승·윤준병

박희승 • 이해식 • 이연희

박홍배 · 김종민 · 안호영

강유정ㆍ허 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이러한 예체 능 교육기관들이 실질적인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당수 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실질적인 돌봄 역할을 하고 있는 예체능 학원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함(안 제59조의4제 3항제1호마목 신설).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능학원(음악, 미술 또는 무용)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③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	
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	
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	
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	
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u>.</u>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1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	
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	
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	

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 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 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 라. (생 략) <신 설>

2. · 3. (생략) ④ ~ ① (생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
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예능학원(음악, 미술
또는 무용)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
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2. • 3. (현행과 같음)

④ ~ ① (현행과 같음)